

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
제268회 제1차 정례회 (2024. 6. 14.)

마포구 종합관광안내소 위탁운영 사무 재위탁 동의안

검 토 보 고 서



행정건설위원회

전문위원 권하나

마포구 종합관광안내소 위탁운영 사무 재위탁 동의안

검 토 보 고

1. 제출경위

- 가. 의안번호: 24-67
- 나. 제 출 자: 마포구청장
- 다. 제출일자: 2024년 5월 24일(금)
- 라. 회부일자: 2024년 5월 28일(화)

2. 제출사유

마포구 방문 관광객들의 여행 편의 제공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민간 기업으로 재위탁 사업체를 선정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 및 구 관광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 제2항에 따라 마포구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: 마포구 종합관광안내소 운영

나.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

1) 추진 근거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, 제22조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」 제22조

2) 추진 필요성

- 관광안내소 운영은 체계적인 관광 안내와 외국어 지원 및 편의 제공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전문 업체에 민간위탁이 필요함
- 관광 분야 수행실적이 뛰어난 업체에 관광안내소 운영 사무를 위

탁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광 안내 사무를 수행할 수 있음

다.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: 마포구 종합관광안내소 통합 운영 및 관리

- 관광정보 제공·안내, 홍보물 배포·관리 등 관광안내 관련 업무
- 관광통역 안내원 선발·관리, 정기적 전문화 교육 실시
- 장비 및 비품 관리, 위생 및 청결, 보안 유지 등
- 그 외 기타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마포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라. 위탁시설 현황

1) 시설 운영현황

- 마포관광안내소

구 분	내 용
위 치	●마포구 홍익로 22(서교동)
운영시간	●10:00 ~ 19:00 (연중 무휴)
외국어지원	●영어 / 중국어 / 일본어
서비스 내 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내방 내외국인관광객 대상 관광정보 제공 및 안내 - 마포구 및 서울시 주요 관광지 관광정보 제공 - 교통·숙박·쇼핑·음식점 등 관광문의 안내 ●게스트하우스 예약 등 편의서비스 제공 ●관광홍보물 배포 및 관리 / 관광불편신고 접수 및 처리 등

- 차량이동형관광안내소(홍카)

구 분	내 용
운 영 일	● 월 15회
운영시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11:00 ~ 18:00 - 행사지원, 계절 등을 고려 탄력적 운영 가능 - 야간활동 시 오후 15시~오후 21시
운영장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마포구 주요 관광명소 및 레드로드페스티벌, 새우젓 축제 등 행사장 (레드로드 R2, R5, R6)
서비스 내 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찾아다니는 이동형 안내서비스 - 주변 교통·숙박·쇼핑·음식점 등 관광 안내 및 관광컨설팅 ● 마포구 관광 홍보 - 현수막, 어깨띠 홍보 캠페인, 마포구 홍보물 배부, 관광 추천 및 안내

2) 인력 운영현황

연번	담당자	직위	구분	업무내용
1	차병철	센터장	사업총괄	·위탁사업 총괄, 회계책임자
2	신동찬	팀장	관광통역 안내사	·현장 운영 업무 총괄 관리 ·관광통역/안내업무/홍카운전 (영어)
3	김수영	사원		·관광통역/안내업무/홍카운전 (일본어)
4	이지은	사원		·관광통역/안내업무 (영어)
5	윤다연	사원		·관광통역/안내업무 (영어)
6	박계향	사원		·관광통역/안내업무 (중국어)

마. 위탁현황

1) 수탁기관

단체명	대표자	소재지	전화번호
(사)외국인관광도시 민박업협회	채보영	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4길 49	02-332-3966

2) 위탁기간 : 2022. 1. 1. ~ 2024. 12. 31. (3년)

바.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 근거 및 기간

1) 근거 :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 제2항(2022.1.1. 개정)

2) 위탁기간 : 2025. 1. 1. ~ 2027. 12. 31. (3년)

사. 수탁자 선정방식 : 2016년 공개경쟁입찰 후 재계약 또는 재위탁

아. 소요예산 : 227,225천원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」 제6조 및 제8조
- 2)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

5. 검토의견

- 본 동의안은 기존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될 예정('24.12.31.)인 「마포구 종합관광안내소」의 운영·관리 사무를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에 3년간 재위탁(’25.1.1.~’27.12.31.)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것임.
 - 다만, 본 동의(안)은 일반적인 민간위탁 “재위탁”이 “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의회 동의를 갈음”(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제2항 본문) 하는 것과 달리,
 - “해당 사무(마포구 종합관광안내소)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면서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”(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제2항 단서1)에 해당하여 “재위탁”임에도 구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함.
- 본 동의안에서 민간위탁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무는 「마포구 종합관광안내소」의 운영 업무로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1항제3호²⁾에 해당되어 민간위탁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며,
 - 종합관광안내소³⁾는 외국어에 능통하고 지역의 역사와 정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풍부해야 하는 등 특수한 전문성과 노하우가 필요할 것으로 판

1)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5조(의회 동의 및 보고)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1.5.6, 2023.3.9.>

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1.5.6.>

③ 1년 단위 이하의 반복적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한다. <신설 2021.5.6.>

2)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 등)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3) 서울 내에 관광안내소를 운영하는 지역은 마포구, 은평구, 서대문구, 중구, 용산구, 종로구, 도봉구, 송파구, 강남구, 성동구 등 10개임 :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자료 참고

단되므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민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관리하는 것이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판단됨.

- 마포구 종합관광안내소의 운영은 처음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여왔고 위탁기간의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은 효율적인 업무 처리와 비용절감 측면에서 타당하다 사료됨.
- 다만, 수탁자 선정 시 심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기하여 국내외 관광객에게 전문적인 관광안내 및 홍보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성과 재정능력을 가진 민간전문기관(단체)에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.
- 한편, 동 사업의 설립 및 시행과정을 살펴보면, 마포구 종합관광안내소 운영 시기는 2016년부터이며 이후 마포구는 동 시설의 운영을 “(주)프리미엄패스 인터내셔널”에 최초 위탁하였고 2021년 현 위탁기관인 “(사)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협회”에 위탁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바, 구의회 동의 받지 않고 현재에 이르고 있어 이는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임.

[표 1. 마포구 종합관광안내소 위탁운영 현황]

차수	위탁기간	위탁유형	수탁기관	비 고
1차	2016.1.1.~2018.12.31.	최초 위탁	(주)프리미엄패스인터내셔널	최초 민간위탁 시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나 동의를 받지 않음
2차	2019.1.1.~2021.12.31.	재계약	(주)프리미엄패스인터내셔널	
3차	2022.1.1.~2024.12.31.	재위탁	사단법인 외국인 관광도시민박업협회	최초 위탁 후 6년이 경과한 후 최초 도래하는 재위탁은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나 구의회 보고로 갈음함

[표 2.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 현황]

조례 개정일	개정 조항
<p>2015. 9. 24. (구의회 동의 신설)</p>	<p>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③ 구청장은 행정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사무의 내용, 위탁기간, 소요예산에 대하여 수탁기관 선정전에 위임사무는 미리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<u>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(이하 “구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다만,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</u> <신설 2015.9.24.></p>
<p>2021. 5. 6. (6년 경과한 후 최초 도래하는 재위탁재계약 시 구의회 동의 신설)</p>	<p>제5조(의회 동의 및 보고)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(이하 “구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1.5.6., 2023.3.9.>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<u>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</u> <개정 2021.5.6.> ③ 1년 단위 이하의 반복적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한다. <신설 2021.5.6.></p>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에서는, “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” 라고 하여 조례에 위임하고 있고,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(의회 동의 및 보고)제1항은 “구청장은 …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”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의 없이 시행함.
- 단체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해당 의회의 동의를 규정한 법령의 입법목적은 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을 높이고 수탁자 선정 등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이므로, 이러한 법령의 위반은 건전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음.
- 이와 관련하여 동 사업 추진 경위와 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민간위탁을 한 사유에 대한 관련 부서의 설명이 요구된다 할 것이며,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.

《 재위탁·재계약 민간위탁 추진절차: 구의회 동의 (P47) 》

구 분	재위탁(공개모집)	재위탁(수의협약)	재계약
① 재위탁·재계약 추진계획 수립	민간위탁 지속필요성(시행사무 적정성 심의), 공개경쟁 가능성, 수탁가능업체, 재계약 가능 여부 등 사전 조사 위탁사무 내용, 기간, 비용, 수탁자 선정방법 등 결정		
② 구 의 회 동 의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background-color: #ffffcc; padding: 5px; text-align: center;">구의회 동의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→ 의회 동의 받은 이후 6년 경과 마다 의회 동의 필요 ▶ 조례 §6① 의회 동의안 제출 ▶ 1년 단위 이하의 반복적 자치사무 → 구의회 동의 배제 		
③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	-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background-color: #ffffcc; padding: 5px; text-align: center;">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수탁기관 적정성 심의 ▶ 수의협약 근거사유 심의 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background-color: #ffffcc; padding: 5px; text-align: center;">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수탁기관 적정성 심의 ▶ 성과평가 결과 심의 ▶ 시정요구 결과 반영 ▶ 재계약 적정성 심의
④ 수탁기관 선 정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background-color: #ffffcc; padding: 5px; text-align: center;">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수탁기관 적격자 선정 	-	
⑤ 재위탁·재계약 협약체결	재위탁·재계약 협약 체결 (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 한하여 90일 범위에서 위탁기간 일시 연장)		
⑥ 위탁사무 인계인수 등	위탁사무와 시설 인계인수, 사무편람 작성과 비치 등		
⑦ 사후관리와 성과평가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 지도·점검(감독), 감사: 필요 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에 한해 매년 2회(반기별 1회) 이상 ▶ 성과평가: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실시 ▶ 재위탁·재계약: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수탁기관 선정 ▶ 재계약: 지도·점검에 따른 시정결과와 성과평가 결과 반영 		

■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

- 제22조(업무의 위탁) ① 구청장은 안내소의 업무를 관광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. <개정 2015.9.24, 2020.7.9>, <단서신설 2020.7.9>
-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안내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<신설 2015.9.24>, <개정 2020.7.9>
-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 <신설 2020.7.9.>

■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- 제5조(의회 동의 및 보고)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(이하 “구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1.5.6., 2023.3.9.>
-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1.5.6.>
- ③ 1년 단위 이하의 반복적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한다. <신설 2021.5.6.>